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0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제2조의 부과대상 삭제(안 제3조에 포함)

다.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및 제34조 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추가(안 제3조에 따른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명료하게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함.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